

# AI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논의

- 살처분시 예외조항 필요 -



지난 6월 10일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가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선중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본고는 이날 다뤄졌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했다.

- 홍보팀 -

## 살처분 범위 일부 보완

2003년을 시작으로 금년에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수칙(SOP)'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SOP에 따르면 AI 발생농장을 포함한 반경 500m 범위를 살처분 원칙으로 하되, 방역상 필요 시 3km로 확대 실시할 수 있어 현행 SOP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단, 상황에 따라 예외조항을 두어 융통성 있게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천연기념물(연산오계)이나 국내 재래닭의 유전자원(축산과 학원 보유) 등 보존가치가 높은 닭에 대해 AI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방역을 강화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금류들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한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금년 AI 발생지 중 일부는 가정집 등 방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사육형태에서 발생되면서 역학적 관련이 없는 대규모 전문농장이 살처분 반경 안에 포함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원종계(GPS)농장, 대형농장 등 방역시스템이 철저히 관리되는 농장은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없을 때에는 살처분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살처분을 시행치 않았을 경우 추후 해당 농장에 AI가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하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AI 방역 시스템 지자체로 할당

조속한 방역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 보고체계를 생략(간소화)해 지자체 허가 하에 초동방역 등 조기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AI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검역원장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로 단계를 거쳐 검토하는 체계는 행동라인의 다양화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방역체제로 조기 종식에 앞장서야한다는 의견이다. 앞으로 검역원에서 하는 업무 중 일부를 지자체로 이전해 단순화 및 단일화 시스템으로 보다 조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즉, 수의과학검역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바이러스 분리검사의 경우 지자체의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최종 항원검사는 현재처럼 검역원에서 결정해야 함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초동방역 해결을 위해 '지방예찰방역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효율적으로 AI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역중심으로 전문성을 띤 양계전문수의사, 학계교수, 관계 공무원, 관계 농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방역대 설정 및 살처분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환경적 요인에 따라 융통성 있는 살처분 범위 설정으로 효율성을 기하고, 정부로 집중된 결정권을 지역 내에서 조속히 논의해 최대한 신속한 방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전국 가금류에 대한 예찰 강화

정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리는 연중 상시 체계로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 할 방침에 있다. 20수 이상의 오리농장은 등록을 통해 시료채취로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계분검사를 포함해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해 조기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오리 전수검사에 같은 의견을 나타냈고, 토종닭과 육용실용계는 임상검사를 실시해 평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자고 언급했다. 감시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양계전문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해 출하 10일전 폐사율, 산란율 등 임상검사를 의무화해 모든 가금류에 대해서는 농장에서 출하(반출)시 '임상검사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증명서가 없으면 도계를 하지 못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자가도축 원천적 금지

질병차단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가든이나 시장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가도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고 언급했다. 단, 도계 시 '휴대검사증명서' 및 '임상검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소지해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토종닭은 전문 도계장이 없어 대부분 유통 중 자가도축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토종닭 전문 공영도계장을 통한 유통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준 위원장

## 차단방역 등급제 실시

농장 점검 시 방역실태조사를 통해 농장 등급별로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AI 초기 발생농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차단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농장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차단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농장에 대한 차등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AI 발생시 살처분 해당 농장의 경우, 차단방역을 제대로 실시하는 농장과 미비한 농장을 등급화해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건의 사항

이 자리에서는 AI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초기 발생시 이동통제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에 'AI 과견팀(가칭)'을 구성해 초동방역에 철저히 대응하자고 전했다.

또한 반경 안에 포함되는 양계산물을 반출할 때에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공익수의사만이 아닌 양계전문수의사 등 검사자 범위를 확대해 농가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하천에 있는 야생오리의 알은 잡식성인 까치가 먹는 경우가 많고 까치는 농가 주변에 날아와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야생조류검사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치를 포함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면서 앞으로 AI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계**